

우리나라 産業디자인의 現況과 그

産業디자인의 現況·問題點·振興 ·保護策

우리는 지난해에 半萬年歷史上 처음으로 貿易收支는 물론이려니와 經常收支面에서 黑字의 元年을 이룩하는 기적을 創造해 내었다. 天然資源의 不足과 技術의 脆弱性을 意志와 勤勉으로 이겨낸 산증거라 하겠으며 「하면된다」라는 自身感과 無限한 能力을 所有한 國民임을 實感하게 하였다. 從來의 우리 經濟가 「成長追求型」의 運營方式이었다면 이제는 「成長活用型」의 經濟運營方式으로 經濟運營 基本方向의 轉換이 指向되어 질 것이며 産業의 發展은 加一層 加速化 되어 갈것은 明確한 것이다. 이러한 環境가운데서 「디자인向上問題」는 國民들로 하여금 중요로운 가운데 格調높은 生活樣式을 形成해 나가도록 하기위한 重要課題로서 生活, 産業, 通商等 여러側面에서 크게 부각되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只今 世界는 貿易自由化의 소용돌이속에 휩쓸려 있

으며 貿易自由化의 물결은 開發途上國들을 사정없이 덮치면서 擴散되고 있는 反面 先進強大國들은 自國産業의 保護란 名目으로 그 保護貿易의 障壁을 더욱 높이 쌓고 있는데, 이러한 貿易自由化의 힘난한 환경속에서 今後 우리의 商品들은 世界市場에서 뿐만아니라 國內市場에서 까지도 優秀한 先進外國商品들과 熾烈한 競爭을 벌이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中小企業들의 主生産品인 消費財와 耐久消費財들은 그 「디자인」의 良否가 다른 商品要素(品質, 價格等)와 더불어 需要者들로부터 非常한 관심과 評價를 받게될 것이다. 또한 近代産業에 있어서 産業디자인 즉 Industrial Design은 商品의 價値決定에 重要한 要素로 되어있으며 이웃나라 日本을 비롯한 歐美先進國에서는 企業의 競爭力을 左右하는 「열쇠」라고들 認識되어진자가 오래이건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一般 産業界에서는

Ⅰ. 産業디자인의 現況과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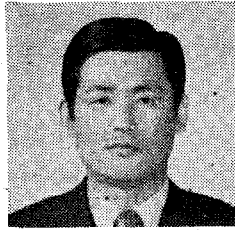
1. 産業디자인의 現況

現在 우리나라의 産業製品들은 企業의 「디자인」에 對한 安易한 認識, 即 外國의 優秀디자인의 模倣이 손쉽고 經濟的으로도 利益이라는 짧은 眼目的 그릇된 思考때문에 外國의 優秀디자인을 模倣하거나 Buyer's Design(物品의 購買要求者가 提示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수용하는 불과한 것이라해도 지나친 表現은 아닐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實例로서 現在 意匠法에 依한 意匠登錄을 받기위하여 特許廳에 出願되어지고 있는 出願意匠中, 登錄이 拒絶되는 分의 約 60% 以上이 外國意匠에 類似하거나 容易創作이라는 理由로 拒絶査定되고 있으면, 1985年 7月 UN産業開發機構 (UNIDO)에서 實施한 開發途上國의 産業디자인 支援事業計劃에 依據 우리나라의 産業디자인 現況을 調查

分析한 現「비엔나」 應用美術大學의 칼·아우백(Carl Auböck) 教授의 報告書(산업디자인 85,86/4인용) 內容 一部를 발췌 소개함으로써 外國人디자인專門家의 눈 에 비친 우리나라 産業디자인의 現況을 再認識할 수 있는 契機가 될것으로 본다. 同 教授는 韓國의 産業製品에 對하여 「현재 韓國産業製品들은 우수한 外國製品들을 모방하거나 수용한 것이며 그 價格은 이들外國製品보다 더 싸다. 韓國에는 獨創의 디자인이 거의 없으며 그것은 外觀上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것 같다. 그러므로 몇몇의 특수한 예들을 제외하고는 模倣의 容易性 때문에 獨創的製品 開發이나 디자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것이 現實情에서는 놀랄일이 못된다」라고 했으며 또 「韓國의 투자여건의 취약점의 하나는 知的所有權에 대한 일관성없는 保護였다. 예를 들면 韓國은 化學과 製藥에 있어서 「製法」 特許는 있으나 「物質」 特許는 없다. 그러므로

振興策

중심으로



鄭完燮

〈特許廳 意匠審査擔當官〉

이렇듯 중요한 「디자인」에 대한 認識이 마냥 安易하기만한 印象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은 값을 받을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는가, 模倣이 값이싸며 간단하고 經濟的으로도 보다 效果적이다」라는 그릇된 認識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의 「디자인問題」는 그것이 바로 經濟問題이며 基本的으로 國民經濟의 側面에서 다루어져야 할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卽 産業디자인의 獎勵와 改善은 國家産業振興의 基礎가 될 것이며 또한 輸出振興의 旗手가 될 것이다.

이에 筆者는 「産業디자인 振興」의 重要性을 깊이 느끼고 이의 振興을 위하여 우리나라 産業디자인의 現住所를 밝혀보고 이의 振興策에 대한 意見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筆者 註>

한단계의 생산과정만 바꾸면 模倣이 가능하다. 그래서 1987년까지 物質特許가 고려중이다」 또 디자인現況에 對하여서는 「韓國은 經濟, 社會 및 其他分野에 있어서는 刮目할만한 進歩에도 불구하고 獨創的이고 創造的인 製品디자인 分野에선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이 分野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開發途上國의 水準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선 무분별한 模倣이 판치는 디자인 정글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신랄한 比評을 加하고 있으며 가장 重要한 디자인의 全般的 發展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生産 指向의 디자인으로부터 마케팅 指向의 디자인으로의 成功的 履行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論評했다. 이와 같은 外國人 專門家의 꾸밈 없는 論評은 우리의 産業디자인 現實을 直視한 값비싼 忠告이며 우리는 이같은 忠告를 고맙게 받아드려 反省하고 우리의 産業디자인 現實속에 도사리고 있는 發展 阻害要因들을 摘出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이의 解決策을

時 論

目 次

- I. 産業디자인의 現況과 問題點
- II. 産業디자인의 振興策
- III. 産業디자인의 保護策
- IV. 結 論

〈이번號에 全載〉

강구하는 同時 國際社會에서의 부끄러움없는 發展을 圖謀해야 하는 것이 이 分野에 從事하는 우리 모두의 使命이며 任務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2. 問題 點

前述한 産業디자인의 現況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問題點이라면 企業이 自己生産製品에 對한 獨創的인 디자인을 開發하지 않고 模倣 一邊到의 디자인施策을 펼쳐 나가고 있음이라 하겠다.

Idea(發想)의 模倣은 때로는 좋은 物品을 創出해낸다는 期待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디자인」으로 되면 이는 商業上 또는 工業上 無體財產으로 되어지므로 그 模倣은 工業所有權의 侵害가 되거나 不正競爭行爲가 된다.

따라서 經濟社會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로 臺頭되게 되는 것이다. 英國을 비롯한 諸國과 先進諸國에서는 어떤 디자인이 先사 工業所有權으로서 權利化(登錄)되어있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은 考案者의 商業上의 얼굴(Commercial face)로서 尊重되어지며 만약 他人이 模倣하게 되면 그 模倣行爲는 Common Law에서 말하는 「Passing off action」으로서 社會的制裁가 加해지게 되며 또한 社會的 良識은 經濟社會에 있어서의 公序良俗을 亂亂케 하는 不誠實한 商業行爲를 排除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點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크게 反省해야 할 點이고 이러한 慣習이야말로 우리가 서슴없이 模倣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實際問題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模倣은 業者間에 지나친 價格競爭을 불러 일으키며 그 結果 品質의 粗雜을 招來하고 나아가서 海外市場에서의 信用墜落과 國內市場에서의 去來秩序를 亂亂케 함으로써 결국은 相互間 모두가 到産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은 自己의 獨創的인 特色있는 디자인

을開發하고 他人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손을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重要하며 이것이 去來秩序의 安定을 유도하는 基盤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貿易自由化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企業은 自體적으로 디자인 施策(디자인 專擔部署의 設置 및 同部署의 運營方針과 디자이너의 積極적인 活用等)을 樹立하여 自己 디자인의 開發은 물론 그 管理에도 充實을 期함으로써 企業의 競爭力을 強化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의 模倣生産을 創造的 生産으로 轉換토록하기 위해서는 企業自體의 努力만으로는 不可能하며 이의 成功的인 遂行을 위해서는 企業과 디자이너의 不斷한 努力과 消費者의 關心 그리고 政府의 支援施策 및 保護施策等이 相互合하여 調和를 이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I. 産業디자인의 振興策

1. 現 況

産業디자인의 振興을 위하여 政府는 물론 一部 大企業에서도 最近 많은 關心들을 가지고 있음은 事實이다.

우선 企業의 側面을 보면 數個의 大企業에서 디자인 研究室을 設置活用하면서 自體디자인 開發에 많은 努力을 경주하고 있으나 勤勞條件 및 賃金等의 問題로 優秀디자이너를 大量確保하지 못하고 있으며 企業間의 市場爭奪 競爭때문에 짧은 時間內의 디자인 創作을 要求하게 되므로 결국 特色있는 優秀한 디자인을 開發하지 못하고 약간의 變形을 가한 模倣디자인을 生産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實情이라 하겠다.

특히 中小企業에서는 아직 模倣의 容易性에 대한 思考方式마저도 씻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政府의 側面, 即 行政支援施策의 面에서 보면 政府는 일찍이 輸出振興을 위하여 輸出商品디자인 開發의 重要性을 看破하여 1966年度에 디자인 指導研究 機關으로서 現 韓國디자인포장센터를 設立運營하면서 1970年度에는 商工部 通商振興局內에 「디자인 包裝課」를 設置함으로써 産業디자인의 振興을 위한 體制를 구축하였고 産業美術展覽會를 비롯한 優秀工藝品展示會等 各種展示會를 持續적으로 開催함으로써 産業디자인에 대한 認識을 널리 고취시켜 왔으나 企業內部에 깊숙히 뿌리박힌 模倣의 容易性에 대한 認識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政府施策代行的 唯一한 機關인 韓國디자인포장센터가 豫算의 制約때문에 活潑한 活動을 펴나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政府內의 디자인 振興政策의 專擔部署였던 디자인 包裝課가 他課에 併

합吸收되어 버린 것은 産業디자인의 振興이 그 어느때 보다는 重要하게 要求되어 지는 現時點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므로 同機構는 다시 復活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振興策

가. 各主體의 役割

모든 生産製品들의 디자인을 向上시킴으로써 調和된 生活環境을 造成토록 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企業, 디자이너, 消費者等 直接的으로 關係主體가 되는 이들이 各기 나름대로의 役割을 百分發揮 할 것이 期待되어지며, 政府및 디자인振興機關等 디자인 振興主體도 優秀한 디자인이 提案되어져서 이것이 生産으로 移轉되고 市場에서 正當한 評價를 받게되어 購入, 使用되어 질 수 있는 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적절한 指導啓蒙等의 施策을 積極적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나. 디자인 振興策을 위한 課題

(1) 디자인 振興體制的 整備擴充

政府機構內에 디자인振興業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設置하여 生産者, 販賣者, 디자이너, 公共機關, 一般消費者等에 對한 情報提供, 展示事業等의 指導啓蒙事業의 遂行및 디자인關係機關相互間의 調和形成을 推進해야 할 것이며 現任의 韓國디자인포장센터를 綜合的인 디자인振興機關으로 그 機能을 大幅 擴大 強化하는 한편 中小企業振興公園과 中小企業協同組合等으로 하여금 各分野別로 디자인振興을 擔當케 하며 大韓貿易振興公社(KOTRA)의 海外貿易館을 통한 外國디자인 情報의 수집役割과 위 各主體機關의 地方事務所를 設置하여 中央과 地方의 情報交換으로 地方産業의 디자인 振興을 圖謀함으로써 情報센터로서의 機能을 確立하여 디자인 振興을 위한 全國的인 協力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重要 할 것이다.

2) 試驗研究體制的 確立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의 社會的 進出에 따라 私設 디자인研究所等이 設立되고 있으나 國家的인 次元에서 다음과 같은 業務遂行을 위하여 國公立試驗研究機關의 設立運用이 必要視된다.

(가) 將來의 國民消費生活의 動向과 市場動向을 파악하여 未來의 生活樣式과 그에 對應할수 있는 方案의 調査研究

(나) 人間工學, 社會環境工學 및 行動科學等을 통한 「人間과 環境」, 「人間과 物件」等의 諸般關係를 明確히 파악함으로써 이 分野의 디자인 開發에 共通되는 基礎的 데이터를 얻을수 있게 해야한다.

(다) 어린이 및 老人과 身體障者等을 위한 器具, 用具, 施設의 積極적인 開發.

이들은 現在 社會의 要請이 高조되고 있는 分野이나 市場의 特殊性等에 따라 民間企業에서의 開發은 극히 곤란하다.

(라) 其他 新技術, 新素材의 應用과 새로운 디자인 開發技法의 研究等 民間企業 水準에서 行하기 곤란한 分野에 대한 研究.

(3) 消費者에 對한 啓蒙活動

消費者들로 하여금 優秀한 디자인을 選擇할 수 있는 眼目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消費者에 對한 디자인 情報提供과 優秀商品展示會 및 Good Design 商品選定事業等을 通하여 消費者에게 優秀디자인 選擇의 指針을 提供해야 한다.

(4) 企業體로 하여금 優秀디자인을 開發할 수 있는 能力 養成

業種別 디자인 振興事業과 Good Design 商品選定事業等 많은 디자인 展示會를 通하여 企業에 對한 디자인 開發指導를 強化하고 地方産業디자인 開發推進 및 中小企業디자인의 高度化를 위한 政策의 수립等을 通하여 디자인 開發指導의 積極적인 추진과 企業體 自體 디자인 研究所設置運營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5) 國際交流의 促進

디자인 分野에 대한 國際交流로서 우리나라 디자인의 水準向上을 圖謀한다. 이를 위하여 國際貿易博覽會의 持續적인 開催 및 他國博覽會에의 積極적인 參加와 디자인 調査員의 海外派遣, 國際會議等에 적극 參加하여 디자인 情報의 交流를 도모하고 國際디자인展等을 開催하며 海外研修生의 多數派遣으로 優秀專門家를 養成해야 한다.

(6) 凡國民 運動의 展開

디자인에 關한 認識을 一般國民들에게 널리 浸透시키고 디자인 人口의 저번확대를 위하여 「디자인의 해」等을 設定하여 凡國民의인 運動을 展開하고 各種 産業展示會 等에는 반드시 優秀디자인 賞을 制定하여 展示會 出品者는 물론 觀覽者들로 하여금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히 고취시킨다.

Ⅲ. 産業디자인의 保護策

1. 概 況

앞에서 産業디자인 振興策을 위한 課題들을 나열해 보았으나 그들에 앞서 가장 重要한 事項은 創作디자인의 積極적인 保護策이라 하겠다.

어느 個人이나 企業이 많은 費用과 時間과 努力을 投入하여 敍 開發해 놓은 創作디자인이 同業者에 依해서 容易하게 模倣되어진다면 企業이나 個人의 디자인 開發意慾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며 이는 또한 디자인 振興에 있어서 極히 重大한 阻害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他人의 디자인模倣問題에 對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基本的으로는 開發되어진 他人의 디자인을 尊重할줄아는 商慣習이 이루어지는 社會環境의 造成에 따라 解決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겠으나 이는 우리의 現實에서는 期待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關聯諸般法規에 依해서 保護措置가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디자인 保護에 關聯되는 法規는 意匠法과 著作權法等의 知的所有權法外에 輸出商品디자인의 國際的 信用維持와 國內 同業者間의 過當競爭防止를 目的으로한 輸出商品패턴登錄令과 不正競爭防止法等등이 있으나 이러한 法令들은 主로 디자인의 模倣防止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對하여 이들 디자인關聯法規의 基本法役割을 하고있는 意匠法에 依한 디자인 保護(登錄)制度는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를 保障하고 그 權利를 積極적으로 保護하기 위한 것이며 同時에 排他獨占權이라는 強力한 私權을 設定해 주고있으므로 意匠의 需要가 점차 高潮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意匠法에 依한 保護制度는 그 期待가 사뭇 크다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意匠法을 中心으로한 意匠의 保護策에 對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現行制度下에서의 問題點 및 改善策

現行 意匠法에 依한 意匠의 保護制度는 創作意匠을 獎勵함으로써 國家産業發展을 圖謀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는 바 産業意匠의 振興은 곧 國家産業의 發展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現行制度에 對한 問題點을 分析하여 改善策을 모색해 보는 것은 制度發展側面에서도 그 意義가 크다 하겠다.

現在 企業이나 個人이 創作한 意匠은 意匠法에 依하여 特許廳에 登錄出願이 되어지며 出願된 意匠은 審査過程을 거쳐 登錄與否가 決定되고 登錄手續을 畢하므로써 出願人은 獨占排他的 意匠權을 行使할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過程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이 거론되어 질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意匠法 以外의 他法令에 依한 保護制度에 比하여 出願 및 登錄을 위한 複雜한 手續節次를 必要로 하며 그에따른 費用負擔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他制度에 比하여 保護되어지는 權利의 程度와

차는 크다고 하겠지만 이러한手續절차에 대해서는 西歐先進國들이 採決하고 있는 無審査主義(意匠寄託制度) 등을 研究檢討하여 우리의 實情에 가장 적절한 制度로의 改善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둘째 : 登錄出願된 意匠에 對한 登錄許可의 審査期間이 길다.

前述한 바와 같이 意匠은 그 流行성이 민감하며 季節의인 것도 있어 그 壽命(Life cycle)이 物品에 따라서는 아주 짧은 것도 많다. 그러므로 登錄出願된 意匠이 審査過程에서 1年以上 長期間을 要하게 되면 季節의이거나 流行성이 큰 意匠은 尙사 登錄査定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實効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現在 우리 特許廳의 경우 登錄出願된 意匠은 대개 10~12個月以內에 審査가 完了되는데 이는 日本을 비롯한 歐美諸國에 比하여 6~10個月 程度 빠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期間도 意匠의 性格上으로 볼때 좀더 審査期間을 短縮하여, 季節性과 流行性에 對한 實質的인 保護效果를 얻을수 있는 方案을 樹立할 수 있도록 國際協約에 依한 優先權主張期間認定 및 審査方法 등을 改善토록 研究檢討해야 할 것이다.

셋째 : 意匠保護期間(意匠權存續期間)이 짧다.

現行 우리의 制度에서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8年으로써 日本의 14年을 비롯 其他 歐美諸國의 20~50年(存續期間延長制度에 依한 延長期間包含)과 著作權法에 依한 著作權保護期間 50年等に 比하면 너무 짧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모든 意匠에 對하여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優秀한 創作意匠에 限해서만 짧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登錄意匠權이 法定存續期間인 8년까지 維持되고 있는 것이 겨우 20%程度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長期間存續시킬만큼 優秀한 意匠이 적다는 것을 立證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量的으로는 보잘것 없이 적다고 하더라도 質적으로 優秀하게 創作된 意匠이라면 이들은 長期間 需要者들間에서 人氣를 維持할 수 있을 것이며 有名意匠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優秀한 創作意匠이 단지 8年後에 意匠權이 消滅되어 同業者 누구누가 다 使用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創作者에게는 크게 失望을 주게 될 것이며 따라서 創作意慾을 底下시키는 要因이 될 것이다.

또 한편 外國의 優秀한 意匠을 우리나라에 登錄誘致시키는 데도 크게 寄望을 주게 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意匠登錄出願中 外國人出願對 內國人出願比率는 約 5對 95程度임)

이와 같이 意匠의 保護期間(意匠權存續期間)은 創作의 獎勵에는 물론 外國의 優秀디자인의 國內登錄誘導와 나아가서 產業發展에도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現行制度上에서의 保護期間 8年을 意匠權者의 要求에 依하여 30~50년까지도 延長될 수 있도록 制度의 改善이 必要視되며 이는 結果的으로 優秀한 創作의 獎勵와 外國의 優秀意匠에 對한 登錄誘致에 크게 寄與할 것이고 著作權과의 差別관계도 豫防할 수 있는 方案이 될 것으로 본다.

넷째 : 意匠審査審判官의 專門化問題이다.

意匠法上 意匠의 定義를 보면 "形狀, 模樣, 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으로써 視覺을 通하여 美感을 이끄는 것"이라고 定하고 있는바, 審美感을 主된 要件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審美感이란 人間의 感情에 依하여 느껴지고 判斷되어지는 것으로 客觀的인 完全한 判斷基準을 定하기란 거의 不可能하며 主觀的인 判斷에 依하여 決定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意匠을 보는 視角이 問題가 된다. 現行 制度上에서는 그 分野에 從事하는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의 視角에 依한 判斷을 要求하고 있는데 그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는 그 分野以外的 사람 보다는 한 段階 높은 水準, 即 專門性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專門性을 가진 者가 보고느낀 審美感에 의하여 이를 審査 또는 審判을 하는 者는 그 以上の 專門知識을 가지지 않고서는 完璧한 審査 또는 審判을 할 수 있다고 期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先進諸外國의 例와 같이 意匠審査, 審判官의 專門化는 지극히 當然한 것으로서 當面한 重要 研究課題라 하겠다.

IV. 結 論

이와같이 産業디자인은 國家產業發展에 큰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當面한 貿易自由化와 先進強大國들의 눈아져가는 保護貿易障壁을 넘어서 우리 商品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하여 이의 振興策이 그 어느때보다도 切實히 느껴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産業디자인의 現實은 너무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前述한바와 같은 많은 問題點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의 效果的인 解決을 위하여 우선, 企業體는 디자인의 模倣이라는 安易한 意識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디자인이 企業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莫重한 것인가를 깨달아 企業將來를 내다볼 수 있는 디자인政策을 樹立하여 착실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디자인을 專攻한 디자이너들은 企業의 要求에 滿足하게 應할 수 있는 實力養成에 努力하면서 企業固有의 디자인, 나아가서 韓國固有의 디자인開發과 特性있는 傳統樹立은 물론이려니와 時代의 흐름에 따른 商品의 變化에 앞장서는 位置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또 한편 關係行政機關은 디자인振興을 위한 綜合施策을 樹立하고 디자인振興專擔機構를 設置運營함으로써 디자인振興을 위한 效果的인 體制를 擴充하며 國際的

인 디자인情報交流의 優秀디자이너養成을 위한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消費者들로 하여금 優秀디자인을 選別할수 있는 眼目을 길러주는 것 또한 重要한 對策이라 하겠다. 消費者들의 디자인眼目水準이 높아지면 生産者는 이를 滿足시킬 수 있는 優秀한 디자인商品을 生産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優秀創作디자인에 對한 적극적이고도 效果的인 保護制度를 確立하여 創作을 保護獎勵함으로써 輸出增大와 國家産業發展의 一大 轉換을 圖謀해야 하겠다. <오>

本會主要實行業務

◎ 12월의 메모 ◎

- | | | |
|---|--------------------------------|--------------------------|
| 3日 ◇意匠公報 第567號 發刊 | 상자 시상식 | 치」선정 보도의뢰 |
| 4日 ◇國際發明展 수상자 褒賞金 지급 | 13日 ◇第35回 發明教室 개최 | 22日 ◇特許公報 第1241號 發刊 |
| 5日 ◇第579回 이週의 優秀發明 「내열성 폴리에치렌 파이프의 제조방법」선정 보도의뢰 | ◇第580回 이週의 優秀發明 「김치저장고」선정 보도의뢰 | ◇公開特許公報 第225號 發刊 |
| 6日 ◇實用新案公報 第815號 發刊 | 15日 ◇KIPA通信(86-12) 發刊 | 23日 ◇公開特許公報 第226號 發刊 |
| 8日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23~124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17號 發刊 | 24日 ◇特許出願面에서 본 尖端技術動向 發刊 |
| 9日 ◇意匠公報 第568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17號 發刊 | ◇特許公報 第1242號 發刊 |
| 11日 ◇特許公報 第1240號 發刊 | 18日 ◇公開特許公報 第222號 發刊 | 30日 ◇特許公報 第1243號 發刊 |
| ◇實用新案公報 第816號 發刊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25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19號 發刊 |
| ◇意匠公報 第569號 發刊 | ◇工所權 判例(86-11) 發刊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26~127號 發刊 |
| 12日 ◇제11회 전국초·중학생 발명작문·단화 현상모집 입 | 19日 ◇公開特許公報 第223號 發刊 | 31日 ◇特許公報 第1244號 發刊 |
| | 20日 ◇實用新案公報 第818號 發刊 | ◇工所權目錄(86-10) 發刊 <오> |
| | ◇公開特許公報 第224號 發刊 | |
| | ◇第581回 이週의 優秀發明 「다단식 하수산화 처리장 | |

(案) ~36回 發明教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2月中 第36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 1987年 2月 14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풍림빌딩 10층)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提供)
- ◎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